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85호 2021. 2. 23.(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4호 도로명주소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1-16호 남해군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고시	4
남해군 고시 제2021-19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 사항 고시	6
남해군 고시 제2021-20호 갈화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고시	18
남해군 고시 제2021-21호 상주항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 고시	19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204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2
남해군 공고 제2021-214호 공시송달 공고	44
남해군 공고 제2021-218호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46
남해군 공고 제2021-222호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8
남해군 공고 제2021-231호 공시송달(보상협의) 공고	56
남해군 공고 제2021-239호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59
남해군 공고 제2021-24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64
남해군 공고 제2021-24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65
남해군 공고 제2021-256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66
남해군 공고 제2021-257호 남해군계획시설(문화공원:동대만생태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의제) 공람·공고	69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1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822-9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5)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2.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고시 조서

업무구분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53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822-9	20210106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32-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323	20210112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382-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068-12	20210114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5항리 15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150번길 91-26	20210114		20090427	두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1084-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470번길 14-31	20210114		20090427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97-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180	20210119		20090427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독일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564-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214	20210121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80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202번길 38-15	20210121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1-2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신소로16번길 76-18	20210121		20090427	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9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로56번길 9	20210121		20140527	석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70-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84-19	20210122		20090427	행정리를 이용,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옹동나무를 심자 온 마을이 옹동나무로 뒤덮인 데에서 유래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57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991	20210122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3-1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58	20210122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619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81번길 58	20210122		20090427	무지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147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01-1	20210125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간물번호변경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26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279번길 61	20210127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간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266-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신로66번길 15-1	20210127		20091023	창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21 - 16호

남해군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고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을 수립하
고 그 내용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남해군 청사신축사업

2. 사업의 목적

가. 남해군 청사 건물은 1959년 건축, 59년된 노후 건물로 노후화 및 협소한 시설
로 인해 수시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민서비스 및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행정 수요에 비해 청사 내 사무실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나.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행정서비스 수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므로 시대적
발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편의와 군정업무 수행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사 신축이 불가피함.

3.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일원

4. 총사업비 : 72,893백만원 (공사비 38,487백만원, 보상비 16,210백만원, 부대비
6,817백만원, 운영설비비 168백만원)

5.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명 칭	남해군 청사신축사업	
대상지위치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외 79필지	
부지면적	18,250.00㎡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규 모	연면적 16,538.72㎡(지하층 포함) / 지하 1층, 지상 7층	
시설	청사본관, 군의회, 군민홀, 주민편의시설, 법적의무시설 등	

6.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7. 사업기간 : 2020년~2024년(5년간)

8.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청사신축추진단(청사건축팀, 055-860-883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남해군 고시 제2021 - 19호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 사항 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남 해 군 수

1. 적용 범위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낙시어선업자(이하 “낙시어선업자” 라 한다)와 선원(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 안전요원” 포함) 및 그 낙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영업시간의 제한

낙시어선업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 미설치 낙시어선

-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으로 한다.(기상청 발표기준)

나.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가 설치된 낙시어선 중 어선검사증서 상 항해 가능 시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 03: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3. 영업구역 제한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법 제27조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낙시어선업 영업을 금지한다.

- 가.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
- 나. 야간 어로 및 항해제한·금지수역
- 다. 다른 법령(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
- 라. 간출암
- 마. 남해군의 육지부(유인도서 포함)를 기점으로 3해리 밖의 수역(선외기 설치어선 중 3톤 미만의 낚시어선에 한한다)

4.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사항

- 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사고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7조 제1항을 포함한 제 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운항,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 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 "낚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은 무인도, 갯바위 등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요구 또는 기상악화 등 필요시 하선한 승객 모두를 신고 입항하여야 한다.
- 라. 낚시어선업자등은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 세 미만의 사람 등 승선에 부적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 마. 낚시어선업자등은 「어선법」 제5조의2 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 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 바.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낚시어선업자, 선원, 승객 등)은 반드시 구명조 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아. 낚시어선업자등은 출항 전에 낚시어선의 안전 점검, 기상상태 확인 등 안전운 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 자. 낚시어선업자등은 법에서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낚시어선업자등은 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하는 운항규칙을 준수하여 낚시어선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5. 속력제한

낚시어선업자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미만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가. 남해군 지족해협 내에서 운항할 때
- 나.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운항할 때
- 다. 양식장, 정치망어장, 조업중인 어선의 주변을 운항할 때

6. 낚시어선업자등의 준수사항

- 가. 낚시어선업자등은 [별표 1]에 따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낚시어선 신고 확인증」과 [별표 2]의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및 [별표 3]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문」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 나. 낚시어선업자등은 출항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의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내용을 해양수산부 고시(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한 승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다.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어선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제2항의 승선자 명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라.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 마. 낚시어선업자등은 승객을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그 관할 시장·군수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고시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바. 낚시어선업자등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출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상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 (3) 기상청장이 위 (2)목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1 제1호 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군수가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어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 낚시어선업자등은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 낚시어선업자등은 영업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가.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어선업자등이 승선자명부 작성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승선자명부의 내용을 거짓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어선업자등으로 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의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에 대한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낚시어선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마.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하고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구명조끼 착용 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5)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저해하는 행위

(6)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사. 낚시어선 승객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아. 낚시어선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하는 포획·채취금지기간 및 금지채장 등을 준수하고 채장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2020. 9. 25.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시행)

자.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

- 가. 미FDA에서 실시하는 지정해역 점검기간에는 지정해역 내에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 나.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남해군 고시(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등 낚시관련 법령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고시 제2020-39호는 폐지한다.

[별표 1]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구 분	설 비
1. 안전·구명 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거즈,소독약,해열제,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낙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비고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안전·구명설비의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개별 방침에 따른다.

[별표 2]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 검은색

2) 바탕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
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게시방법의 예
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승객 준수사항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 1.
- 2.
- .
- .

승선정원 ()명

승객 준수사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을 게시하오니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 “낚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이 승선자 명부 작성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승선자명부의 내용을 거짓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3.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어선업자등으로 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의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등에 대한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4. 낚시어선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하고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구명조끼 착용 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저해하는 행위
 -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7. 낚시어선 승객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8. 낚시어선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을 준수하고 체장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9.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3]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게시용) <예시>

1. 안전사고 예방

□ 안전한 승하선 방법

-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 낙시어선 승선시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 사용

장비명	보관장소	사 용 법
구명조끼	보관장소를 기재	① 몸에 걸친 다음 목끈을 맨다 ② 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③ 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④ 호각을 불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구명뗏목	보관장소를 기재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
구명부환	보관장소를 기재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 있도록 하여 사용
구명줄	보관장소를 기재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
소화기	보관장소를 기재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 쪽을 향하여 분사

□ 비상신호

- 장음 3회(호각), 음성방송, 구두로 비상 상황 전파

□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 집합장소 : 갑판
- 피난요령 :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로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

□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 통영해양경찰서 : 상황실 055-647-2742(122접수)
-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구,어업정보통신국) : 055-833-6413
- 남해군청 : 당직실 055-860-3222

□ 유사시 대처요령

- 승 객 : 유사시 선장(선원)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림
- 선장(선원) :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

2. 주요 낚시어종의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

어 종	금지기간	금지체장·체중
주꾸미	5. 11 ~ 8. 31	-
갈 치	7. 1~7. 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제외)	18cm이하(항문장)
문치가자미	12. 1 ~ 익년 1. 31	20cm이하
넙 치	-	35cm이하
감성돔	5. 1 ~ 5. 31	25cm이하
돌돔·참돔	-	24cm이하
농 어	-	30cm이하
볼 락	-	15cm이하
붕장어	-	35cm이하
참문어	5. 16 ~ 6. 30 (시도지사 고시로 5.1~9.15중 46일이상 설정 가능)	

※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 위반시 :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

○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 바람

4. 기타 사항

* 선박내 음주금지 등 선박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승객에게 추가로 전달할 내용 등을 안내

※ 안내(예)를 참고하여, 선박의 구조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 작성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방송용) <예시>

안녕하십니까? ○○호 선장(선원) ○○○입니다.
저희 낙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여러분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안전한 승·하선 방법

-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하시기 바랍니다

2.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 낙시어선 승선시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선내에서 음주는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명조끼는 선실 좌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①몸에 걸친 다음 목끈을 맨다 ②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③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④ 필요한 경우 호각을 불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 구명뗏목은 선미우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사고시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하면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하여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 구명부환은 선미 좌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 구명줄은 조타실 외측 좌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 소화기는 선미 및 선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 쪽을 향하여 분사하면 됩니다.

3. 비상신호

- 호각의 경우에는 장음 3회이며, 음성방송 또는 구두로 비상상황을 전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 요령

- 비상시 집합장소는 갑판이며, 피난 요령은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 관련기관의 유선번호는 통영해양경찰서는 055-647-2742이며,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은 055-833-6413이고, 남해군청은 055-860-3222입니다.
- 유사시 상황을 선장(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시면, 선장(선원)은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포획금지 채장·채중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요 낚시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 채장·채중 및 금어기는 어선에 게시된 어종별 금지기간 및 금지채장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어업인이 위반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절대로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선박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에게 추가로 전달할 내용 등을 안내

※ 안내(예)를 참고하여, 선박의 구조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 작성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1 - 20호

갈화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고시

남해군 고현면 갈화마을 일원의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남 해 군 수

1. 하수처리구역 결정조서

연번	구역명	위 치	면 적(k㎡)	비고
1	갈화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83-23번지 일원	0.35k㎡	

2. 하수처리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갈화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83-23번지 일원	신설	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름

3.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하수처리구역도 공람장소 : 남해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55-860-3334)

남해군 고시 제2021 - 21호

상주항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 고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주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 3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상주항 어촌뉴딜사업

2. 사업의 목적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 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9,270백만원 (국비 6,489, 지방비 2,781)

자부담 314백만원 (수익시설에 대한 자부담)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상주항·금전항 부잔교 신설, 상주항·금전항 물양장 정비, 금전항 진입로 확충, 금전항 어선인양기 설치, 상주항 어구어망창고설치, 상주항 어촌계획관 리모델링, 안전시설 설치 등
- 특화사업 : 샤희장 리모델링, 짐보간 서비스 시설 증축, 금양천 수변공원조성, 해양레저체험시설 설치, 해양레저시설 폰툰설치 등
- S/W사업 : 지역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운영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일원 (상주·금전항)

5. 사업예정기간 : 2020년 ~ 2022년 (3년간)

6. 사업의 효과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위탁시행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8.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사업비	비고
① 공통사업	상주항 부잔교 신설	233	
	금전항 부잔교 신설	512	
	상주항 물양장 바닥면 정비	123	
	금전항 물양장 바닥면 정비	68	
	금전항 진입로 확충	197	
	금전항 어선 인양기 설치	643	
	상주항 유류 및 어구 보관창고 설치	115	
	금전항 공동화장실 및 어구 보관창고 조성	140	
	상주항 어촌계획관 리모델링	150	
	안전시설설치	207	
	소 계	2,388	
② 특화사업	기존샤워장 리모델링	165	
	짐보관 서비스 시설 증축	293	
	테마수변공원조성(금양천)	723	
	주차장 정관판 설치	550	
	수목투광등 설치	66	
	해양레저스테이션조성	1930	
	인공서핑장비설치	600	
	레저시설바닥면정비	55	
	레저선 계류시설 조성	65	
	해안접안계단 조성	12	
소 계	4,459		
③ S/W사업	지역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운영	431	
④ 부대비용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위탁수수료 등	1992	
합 계(①+②+③+④)		9,270	

※ 사업내용은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본계획 열람장소

기본계획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연안관리팀, 055-860-3374)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204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 2. 개정이유
 - 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개정에 따라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를 신설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개정에 따라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강화하고자 함
 - 라.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간소화를 통한 군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마.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안 제6조)
- 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
- 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간소화 및 품목별 수수료 세분화(안 제8조제4항 및 안 별표2)
- 라. 폐기물 반입의 제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 2)
- 마. 재활용가능 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기준 강화(안 별표3)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안전건설국 환경녹지과)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우52425)
 - 전 화 : 055-860-3262, 팩스 : 055-860-3707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전화 055-860-32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 견 제 출 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군 전역”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군수가 법 제8조”를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자가”를 “관리자는”으로, “이행한 경우에는”을 “이행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을 “주민”으로, “법 시행령 제8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를 “제1항”으로, “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 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관시설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등은 수집·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흘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무색(투명)페트병,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5종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필요시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등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리하여 군수”를 “군수”로 한다.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가능자원이 아닌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폐기물배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신고번호)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정장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 군수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군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 2.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과태료 부과 및” 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6조” 를 “법 제16조제1항”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4조에 따라 종량제” 를 “종량제”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판매소” 를 “제12조에 따라 판매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을 “군수는” 으로, “법 제14조” 를 “법 제14조제7항” 으로, “제작·공급·판매” 를 “제작·유통·판매”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판매소” 를 “판매소”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다만, 제1항제4호” 를 “제1항제4호” 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 를 “법 제14조제5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수수료는 현금, 카드,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3. 거리청소 쓰레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 배출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는” 을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p> <p>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p> <p>3. ~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p> <p>2.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관할구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① ----- 생활폐기물----- -----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p> <p>②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p>
<p>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 -----.</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u></p> <p>2. ~ 4.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u>관리자가</u>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p> <p>④·⑤ (생 략)</p> <p>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u>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u>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u>준용한다</u>.</p>	<p>② ----- -----.</p> <p><삭 제></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 ----- -- 관리자는 ----- 이 행하고,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 주민----- ----- -----폐 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 -----.</p> <p>② ----- 제1항----- ----- ----- ----- ----- ----- --에 따른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p> <p>① <u>군수는 지급한 대행료에 대해서 매년 대행계약이 끝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u></p> <p>② <u>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료의 환수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u></p>	<p>제6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등) <u>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 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u> 2. <u>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u> 3. <u>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u>
<p>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u>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 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흘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u>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u>보관시설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동주택의 경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보관시설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아닌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보관·배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 략)</p> <p>④ 대형폐기물은 배출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출 품목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p>	<p>나. 보관시설등은 수집·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보관시설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무색(투명) 페트병,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5종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p> <p>2. 단독주택은 필요시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등을 설치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p>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가능자원이 아닌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폐기물배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신고번호)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정장소로 배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⑤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⑥ ~ ⑨ (생 략)</p> <p><신 설></p>	<p>⑤ ----- ----- 군수----- ----- -----.</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 군수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p> <p>1. 군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p> <p>2.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p> <p>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 략)</p> <p>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배출자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 ----- ----- -----.</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④ 군수는 <u>법 제16조</u>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④ ---- <u>법 제16조제1항</u>----- ----- -----.</p>
<p>⑤ ~ ⑦ (생 략)</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u>법 제14조</u>에 따라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u>종량제</u> ----- ----- -----.</p>
<p>② · ③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생 략)</p>	<p>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판매소</u>로 지정받은 자는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p>	<p>② <u>제12조에 따라 판매소</u>----- ----- -----.</p>
<p>③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정하여 제작·공급·판매</u> 하게할 수 있다.</p>	<p>③ <u>군수는</u> ----- ----- <u>법 제14조제 7항</u>----- <u>제작·유통·판매</u> -----.</p>
<p>④ (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판매소의 지정) ① (생 략)</p>	<p>제12조(판매소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판매소</u> 지정을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u>판매소</u> ----- ----- -----.</p>
<p>③ · ④ (생 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생 략)</p>	<p>제1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1년(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p> <p>제1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군수 또는 대행업체 대표가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 절차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 센터 등이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할 경우 무상 수거 또는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및 운영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반입 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 -----<u>제1항제4호</u>----- ----- -----.</p> <p>제1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 -----.</p> <p>1. (현행과 같음)</p> <p>2.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수수료는 현금, 카드,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p> <p>3. 거리청소 쓰레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p> <p>② 배출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p>
<p>제16조(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 ①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p> <p>1. ~ 3. (생 략)</p>	<p>제16조(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 ① <u>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u> ----- -----.</p> <p>1. ~ 3. (현행과 같음)</p>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신고번호	제 호
배출일자	20 . . .
배출장소	
품명 및 수량	
수수료	금 원

상기 물품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하였음.

년 월 일

남 해 군 수

[별표 2] <개정>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17조 관련)

[단위: 원]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	냉장고	900ℓ 이상	12,000	추가
		700ℓ 이상	10,000	추가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김치냉장고	6,000	추가
2	텔레비전	24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장식대	2,000	
3	세탁기	10kg 이상	6,000	
		10kg 미만	4,000	
4	냉·난방기	세로형(폭50cm당)	5,000	
		벽면부착용	4,000	
		환풍기(팬)	3,000	
5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3,000	
6	오븐렌지	폭1m 이상	4,000	
		폭1m 미만	2,000	
7	전자·전기·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8	가스렌지 후드	모든 규격	2,000	
9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10	청소기	모든 규격	2,000	
11	난로	모든 규격	3,000	
12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13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4,000	
14	VTR, 타자기	모든 규격	2,000	
15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가습기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6	선풍기	일반, 벽걸이	2,000	세분화
		스탠드 대형	3,000	세분화
17	전기밥솥(통)	모든 규격	2,000	
18	노트북	모든 규격	2,000	
19	컴퓨터	본체	3,000	금액조정
		프린터	2,000	
		모니터	2,000	금액조정
		키보드	1,000	
20	팩스기	모든 규격	2,000	
21	전자복사기	모든 규격	3,000	
22	러닝머신	모든 규격	8,000	추가
23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모든 규격	5,000	추가
24	오디오	폭1m 이상	4,000	
		폭1m 미만	3,000	
		스피커 1개당	1,000	
		장식장	2,000	
25	기타 소형가전	모든 규격	2,000	추가
26	보일러	1m 이상	5,000	세분화
		1m 미만	3,000	세분화
27	전기장판(옥매트)	2인용 이상	5,000	세분화
		1인용	3,000	세분화
28	장롱, 옷장	폭30cm당	3,000	
29	침대	2인용(돌침대)	20,000	
		1인용(돌침대)	1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30	식탁	대리석 5인용 이상	8,000	
		대리석 4인용 이하	6,000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31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32	거실장	폭1.5m 이상	4,000	
		폭1.5m 미만	3,000	
33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34	서랍장	1단당	1,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35	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책장	폭1.5m 이상	6,000	
		폭1m 이상	5,000	
		폭1m 미만	3,000	
36	책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책꽂이	2,000	
37	캐비닛	높이1.8m 이상	5,000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3,000	
38	싱크대	찬장 1쪽당	4,000	금액조정
		1쪽당	3,000	금액조정
39	소파	4인용 이상	6,000	
		3인용	4,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40	의자	안마용	5,000	
		학생용	1,000	
		업소(사무)용	2,000	
41	피아노	어프라이트	15,000	
		그랜드	20,000	
		오르간	4,000	
42	쌀통	모든규격	2,000	
43	유리종목(거울, 액자)	m ² 당	1,000	
44	병풍	모든 규격	3,000	
45	문짝	0.9m×1.8m당	3,000	
46	자전거	성인용	2,000	
		어린이용	1,000	
47	유모차,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48	보행기	모든 규격	1,000	
49	물통(저수조)	5톤 이상	15,000	세분화
		5톤 미만	10,000	세분화
50	간판	입간판	2,000	세분화
		0.6m×1.8m 미만	4,000	세분화
		0.6m×1.8m 이상	7,000	세분화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51	세면기	모든 규격	2,000	
52	어항, 수족관	1m 이상	5,000	세분화
		1m 미만	2,000	세분화
53	변기	모든 규격	3,000	
54	욕조	모든 규격	5,000	
55	실버카	모든 규격	2,000	
56	카펫, 장판, 대자리	3.3㎡당	2,000	
57	타이어	소형	3,000	
58	조명기구	모든 규격	2,000	
59	칸막이 패널	1㎡ 이상	3,000	추가
		1㎡ 미만	2,000	추가
60	시계	입식용	2,000	
		벽걸이용	1,000	
61	이불	솜이불	3,000	
		홀이불(담요)	2,000	
62	쿠션, 베개	모든 규격	1,000	
63	의류 건조대	모든 규격	2,000	추가
64	옷걸이	스탠드형	2,000	추가
		벽걸이형	1,000	추가
65	블라인드	모든 규격	2,000	추가
66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추가
67	창문틀	1m×1m당	2,000	추가
68	가방	일반가방	1,000	세분화
		여행용	2,000	세분화
		대형 (골프, 낚시)	3,000	세분화
69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1,000	
70	화분	모든 규격	1,000	
71	반려동물 구조물	개집	3,000	추가
		캣타워	3,000	추가
72	암롤박스(롤온박스)	4.5㎡ 1대당	60,000	
73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74	폐소화기	3.4kg 이상	3,000	
		3.4kg 미만	2,000	
75	마대(잡쓰레기 등)	10kg 당	2,000	금액조정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에 준함.

[별표 3] <개정>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방법(제2조 및 제8조 관련)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방 법
가.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나.종이류 (폐지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비닐코팅 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다.캔류 고철류	○ 철캔, 알루미늄 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라.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가능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방 법
<p>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p>	<p>○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p>	<p>-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단아 배출</p>
<p>바. 합성수지류</p>	<p>○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p>	<p>-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흘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것만 재활용 가능</p>
	<p>○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p>	<p>-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p>
<p>사. 영농폐기물류</p>	<p>○ 농약용기</p>	<p>-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라 넣어 배출</p>
	<p>○ 농촌폐비닐</p>	<p>-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p>
<p>아. 의류</p>	<p>○ 면섬유류 ○ 기타 의류</p>	<p>- 물기에 젖지 않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이불, 담요, 솜 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p>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방 법
자.형광등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 L), 안정기 냉장형(CF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 형광등 분리수거용기나 봉투에 넣어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마대에 배출
차.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리튬1차 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소형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믹서(녹즙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게임기, 안마기, 다리미, 토스터기, 계산기, 시계, 전화기, 모뎀	-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주요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타.폐식용유	○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비 고

1.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2.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배출일·시간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214호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회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 2. 위 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4. 공고기간 : 2021.02.10.~ 2020.02.23.(14일간)
- 5. 공고내용
 - 협의기간 : 송달일 ~ 2020. 3. 31(수)까지
 - 협의장소 : 남해군청 청사신축추진단 (☎055-860-8823)
 -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보상금 수령용, 이전등기용), 주민등록초본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관계서류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6. 공시송달 대상

남해군 청사신축 편입부지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분할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 관계	
1	남해군 서변리	51	대	116	116	울산시 중구 당산 5길 41(우정동)	정미영				지분 2/9

남해군 청사신축 편입부지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1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51	주택	벽돌조 스라브지붕 (9.5×8.4-3.2×3-2-5 ×1.2)	62.2	㎡	2/9	울산시 중구 당산 5길 41(우정동)	정미영		
	"		창고및 화장실	블럭조 스라브지붕 (3×1.5)	1	식	2/9	"	"		
	"		가추	벽체이용선라이트지붕 (2×2)	4	㎡	2/9	"	"		
	"		창고 (옥상소재)	블럭조 스라브지붕 (3×2)	6	㎡	2/9	"	"		
	"		물탱크 (옥상)	FRP(大)	1	식	2/9	"	"		
	"		대문	철재(문주2)	1	식	2/9	"	"		
	"		바닥포장	콘크리트 (1.5×8+5×5+4×5+2×2)	61	㎡	2/9	"	"		
	"		화단	1.2×5×0.5(H)	1	식	2/9	"	"		
	"		계단	콘크리트 (1×6)	1	식	2/9	"	"		
	"		수도		1	식	2/9	"	"		
	"		감나무	R25	1	주	2/9	"	"		
	"		대추나무	R15	1	주	2/9	"	"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같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청사신축추진단 (☎055-860-882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218호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 마을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마을 제308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 식물	서면 장항	291,000	2021.02.14 2031.02.13 (10년)	남해군 서면 서상리	장항어촌계	제84호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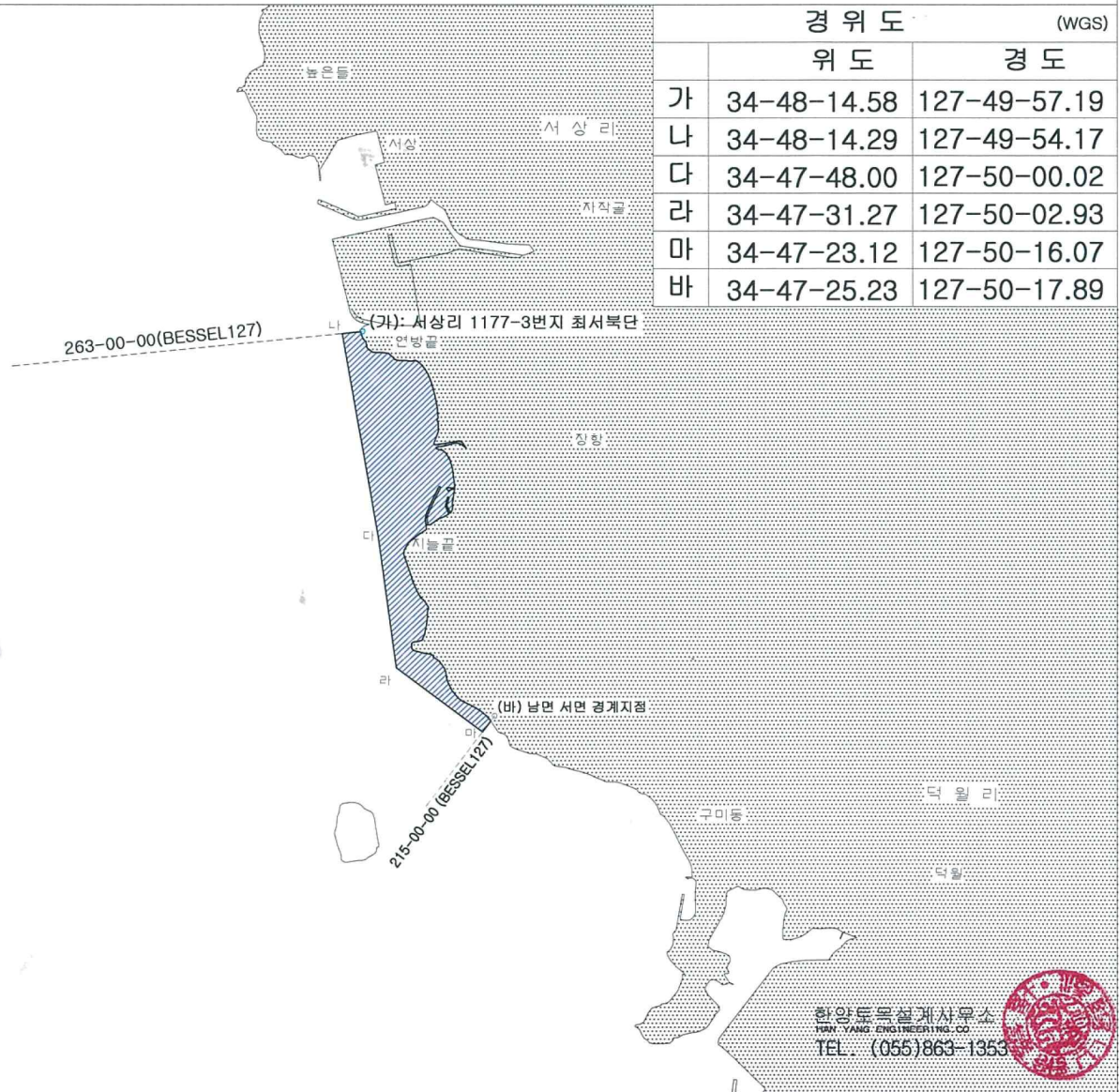
※ '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마을어업면허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마을 제84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 식물	서면 장항	291,000	2011.02.14 2021.02.13 (10년)	남해군 서면 서상리	장항어촌계	기간 만료

남해마을어업 면허 제 308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마을어업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장항지선
4. 기점 및 각점 :
 (가) : 서상리 1177-3번지 최서북단(N34-48-14.58, E127-49-57.19)
 (바) : 남면 서면 경계지점 (N34-47-25.23, E127-50-17.89)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나~바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어장의 면적 : 291,000 m² (29.1 ha)



한양도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1 - 222호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용어 및 이념(안 제2조, 제3조)
- 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안 제5조)
-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안 제6조)
-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16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3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37, 팩스 055-860-375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전화 055-860-8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남해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책무) ①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남해군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체계의 수립 및 운영
4. 마을주민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지원사업
3. 마을활동가·자치전문가 육성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6. 마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7. 취약계층 이웃 돌봄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및 인센티브)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16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4. 주민, 전문인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관련 박람회·세미나 및 국내·외 현장견학 등 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7. 마을공동체와 연계성이 높은 주민참여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① 수탁기관은 마을공동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주사무소를 남해군에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 지원센터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의 성실한 수행
- 2.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수행한 결과의 보고
- 3. 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의 보고
- 4. 다른 법인·단체 등에게 무단 양도·전대 금지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231호

공시송달(보상협의)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2. 사업의명칭 :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 4. 공고기간 : 2021년 02월 16일 ~ 2021년 03월 02일
-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1. 02. ~ 2021. 03.
 - 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재난안전과)
(T: 055-860-3294, F: 055-860-3727)
-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우리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

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매도용 1통, 매수자 : 남해군, 3844)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1통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붙임]

[공시송달대상 토지 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남해군)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현황	당초	편입					
남해읍 아산리	209-8	전	전	1,030.0	75.0	원*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 ***호(대화동, 월****오피스텔)	정*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 ***호(대화동, 월****오피스텔)	재산세납부자
								원*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 ***동****호(화*동, **마을)	상속인
								원*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다길 **, ***동 ***호(삼선동*가, *선 **지오)	상속인
								원*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번길 **-, *층(대*동)	상속인
								원*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 ***호(대화동, 월****오피스텔)	상속인
								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길 **, ***동 ****호(두*동, 두정역****아파트)	상속인
								장*연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로**번길 **	가압류
								홍*표	경상남도 진주시 의*로***번길 **-	가압류
								정*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로**번길 *-*	가압류
								고*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로**번길 **	가압류
								안*현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로**번가길 **	가압류
								농*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남해지부) {**카단***}	가압류
								진주*무서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진주대로***번길 ** {압류. 징세****}	압류
서울*증보협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 (부산시 용지원단) {****카단****}	가압류								
남해읍 아산리	211-2	도	도	307.0	307.0	김*생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번리 ***-	남*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번길 **	재산세 납부자

남해군 공고 제2021 - 239호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택시비를 지원함으로써 야간학습 후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귀가가 어려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액(제4조)

다. 비용지급의 신청, 비용지급의 결정 등(제5조~제6조)

라. 자료제출 요구, 지원 중단 등(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1년 3월 8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42, 팩스 055-860-3750
- 3) 메 일 : suk740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교육청소년팀(860-8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남해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어촌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남해군수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액) ① 제3조에 따른 통학택시비의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를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통학택시를 이용할 때 통학생이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되, 정상요금과 통학생 부담 요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급의 신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통학생들이 1개월 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비용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비용지급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사유의 타당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면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농어촌학교의 장과 협의하거나 야간학습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비용지급을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리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통학생들의 통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학택시비를 지급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학택시와의 협약을 취소한다.

1.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다가 해당 학교의 기숙사 거주로 통학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택시비를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24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	주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소하천명	율도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910번지 일원		
	면적	612 → 591 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0. 11. 2. ~ 영구(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목적 및 사유	창선 보물섬 대안학교 진입도로 확장공사		

남해군 공고 제2021 - 24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정성*	주소	경남 진주시 초북로
소하천명		개린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749번지(146-104 인근)		
	면적	1 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1. 2. 17. ~ 2025. 12. 31.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 배수관로		

남해군 공고 제2021 - 256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 및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3일

남 해 군 수

1.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2.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남해군 문화관광과(☎055-860-8614)
3.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붙임1,2>참조
4. 의견 제출 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문화관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주차장	이동면 무림리 249번지 일원	35,421	감)35,421	-	남해군 고시 제2017-123호 (2017.11.2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주차장	폐지	○ 신전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및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적어 당초 결정된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나. 공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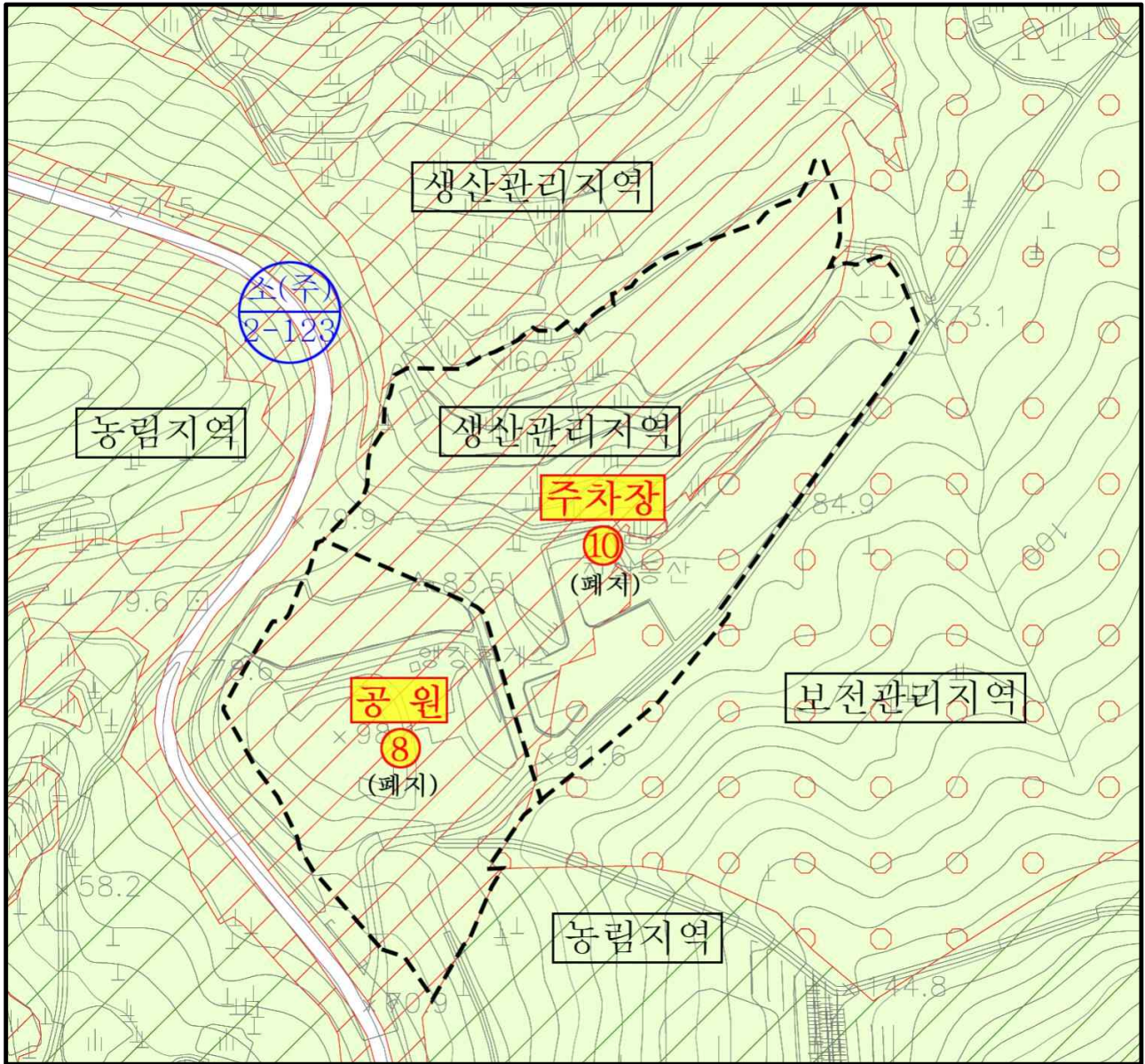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신전 공원	문화 공원	이동면 무림리 산166-1번지 일원	18,006	감)18,006	-	남해군 고시 제2017-123호 (2017.11.2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신전공원	폐지	○ 신전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보상이 어렵고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당초 결정된 공원을 폐지하고자 함

<붙임2>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남해군 공고 제2021 - 257호

남해군계획시설(문화공원:동대만생태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의제) 공람·공고

남해군 고시 제2021-9호(2021.01.12.)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3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문화공원: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
- 명칭 : 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26,81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8. 열람장소 및 기간

○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25,737	26,816					
1	창선면	상신리	1	1	답	8,051	8,010	남해군				
2	창선면	상신리	1	2	도로	293	293	남해군				
3	창선면	상신리	1	3	답	281	281	남해군				
4	창선면	상신리	1	4	답	458	458	남해군				
5	창선면	상신리	1	5	답	2,017	1,506	남해군				
6	창선면	상신리	1	7	답	13,989	8,008	남해군				
7	창선면	상신리	1	8	답	325	325	남해군				
8	창선면	상신리	1	9	답	1,133	1,133	남해군				
9	창선면	상신리	1	10	도로	76	76	남해군				
10	창선면	상신리	1	13	답	580	580	남해군				
11	창선면	상신리	1	14	도로	12	12	국토교통부				
12	창선면	상신리	1	15	답	108	108	남해군				
13	창선면	상신리	1	16	답	28	28	남해군				
14	창선면	상신리	1	17	도로	201	6	남해군				
15	창선면	상신리	1	19	답	36	36	남해군				
16	창선면	상신리	1	23	답	2,540	286	남해군				
17	창선면	상신리	1	29	답	14	13	남해군				
18	창선면	상신리	342		답	617	617	손*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08번길			
19	창선면	상신리	342	1	답	172	172	손*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08번길			
20	창선면	상신리	343		답	2,525	2,525	이*철	진주시 도동천로			3/4
								이*자	진주시 신안들말길 26번길			1/4
21	창선면	상신리	343	1	답	192	192	장*기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2	창선면	상신리	344		답	983	983	박*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23	창선면	상신리	344	1	답	26	26	박*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24	창선면	상신리	347	1	제방	332	85	국토교통부				
25	창선면	상신리	347	2	잡종지	244	244	남해군				
26	창선면	상신리	347	4	잡종지	27	27	남해군				
27	창선면	상죽리	10	2	잡종지	90,477	786	기획재정부				